

전기통신환경의 변화와 전기통신법 개정

83312

김 노 철

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기획과장

Changing Environment of Telecommunications  
and An Amendment to The Telecommunications Law

Kim, No Cheul

Planning Division, Telecommunications Policy Bureau, TCC

1. 서론

1876년 전화가 발명된후 100여년이 지난동안 전기통신의 발전은 참으로 놀라운 바 있었다. 아울러 전기통신의 기술발전은 수송하는 정보의 개량도 수없이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전기통신관계법 규율하는 법령체계는 1885년 전신업무가 개시된후 일제시대의 일본법령의 해방이후 1961년까지의 의용법시대를 거쳐 1961년 12월에 비로소 우리 손으로 만든 전기통신법을 갖게 되었다.

항상 발전해가는 사회 현실을 사후적으로 수습 하던 법령의 일관적 속성에 따라 우리의 전기통신 법도 제정후 다섯차례의 소수개정으로서 그간의 사회적 변화를 수렴해왔고 1977년에는 전면개정에 의의하여 대이탁통신분야를 식별계수용하고 전기통신업종별에 대한 기술지도등을 규정함바 있다.

그런데 1982년 1월 전기통신공사의 발족으로 전기통신관리주체와 기능의 분리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입법 및 관계부처와의 이해부충등의 이유로 전기통신법의 개정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법령발정의 체도를 잃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전기통신환경의 변화와 그 수용체로서의 전기통신법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그간의 전기통신의 판명변화를 일별하고 현행 전기통신법의 개정 필요성, 개정방향을 간단히 설명 하고자 한다.

2. 전기통신환경의 변화

전기통신의 환경이라 함은 사회 여건등 전기통신의 외부적 요인을 말하는 것이겠으나 여기에서는 내재적 요인도 아울러 언급하고자 한다.

(1) 전기통신기술의 발전

19세기말에 전신, 전화로 시작된 전기통신기술은 최근 반도체기술, 디지털기술, 광섬유기술등의 발전과 Computer라는 좋은 동반자를 만나 전송 및 교환등 모든분야에서 가늠할수 없는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

나선로, 무선에 의존하던 전송분야의 기술은 동축 케이블을 거쳐 현재는 광섬유케이블, 통신회선등을 활용하기에 이르렀고 종래의

기계식 교환기는 현재 전자자수 교환기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2)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출현

과거의 전기통신서비스는 전신, 전화 위주였으나 Videotex, TeleFax, Teleconference 등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으로 점차 정보통신 서비스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3) 통신영역의 융합

유선 TV 등 유선과 무선망식이 부합된 통신영역이 등장하고 방송통신위성, MDS, VideoTex 서비스 등은 통신과 방송영역의 한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우편의 등장으로 전기통신과 우편 서비스 자체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4) 통신의 기능 및 역할의 변화

전신, 전화가 주를 이루었을 때의 전기통신은 외사전달매체로서만 기능해왔고 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 또한 사치품 또는 산업발전의 부산물 정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현재의 전기통신은 산업 및 행정활동의 능률화, 규제와의 추진, 국민의 문화권 생활수준에의 기여, 공해도식, 교통문제해결수단, 의료, 교육, 건설, 방재분야에의 공헌등국민의

사회, 경제활동 전반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발전의 필수 수단으로 여겨되고 있다.

(5) 정보화사회의 진전

의역서본과 보인의 부합적인 상승 작용에 의하여 현대사회는 영·공중신, 통신망의 이니지 중심의 산업사회로부터 점차 정보의 가치와 기능을 중시하는 정보산업 중심의 정보

화사회로 이행해 가고 있다.

(6) 서비스 제공 주체의 분화

과거에는 Common Carrier 가 전기통신망의 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을 동시에 수행하였으나 서비스의 개발 및 변화에 따라 Common Carrier 외 회선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 통신업자(VAL)의 등장으로 서비스의 주체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7) 전기통신 관장 기능의 분리

1982년 7월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3월에는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전기통신관장 기능이 분리되었다.

추종택에는 칩신부가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기능과 영업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왔으나 공사 및 회사의 설립을 계기로 영업전기통신사업의 경영은 이를에게 맡기고 칩신부는 통신정책수행의 기능에 전념 할수 있게 되었다.

3. 전기통신법 개정의 필요성

가. 전기통신산업 변화에의 대응책 대처  
의역서본 막과 같이 전기통신의 환경은 부단히 변화되어 왔고 또 변화되어 갈 것이다. 기왕의 법률을 수용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가망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법령의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 전기통신법 체계의 문제점 보완

(1) 운영 전기통신법 체계

표	주요내용
전기통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li> <li>부가유선전기통신의 관리</li> <li>전기통신생산업에 대한 기술지도</li> <li>전화수개업</li> </ul>
전기통신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의 관리</li> </ul>
전기통신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의 내용</li> </ul>
전기통신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의 관리</li> </ul>

전기통신공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통신공사(電氣通信工事)의 규율</li> </ul>
한국전기통신공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전기통신공사의 설립·운영 및 감독</li> </ul>
영공중전기통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공중전기통신사업 투자채권의 조달</li> </ul>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2) 문제점

(가) 전기통신 구분 약의 법 체계를 초월하는

- 기본적 공통규정의 미비
- 각 개별법의 규율분야를 초월하는 종합적인 정책 및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나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곤란
- 정보화사회장기종합계획(유·무선·외상통신, 자기통신, 정보산업육성) 구분 약의 기술진흥등 포함
- 장기통신망계획(전신, 전화, 데이터통신, 근·간, 리통신 수요 포함)
- 국가통신의 종합 관리(유·무선, 공중통신, 차가통신등 포함)
- 연구, 개발 지원정책
- 기술 기준
- 기술 지도
- 전기통신기저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유통관리등

(나) 현행 전기통신법은 공중통신사업영역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전기통신분 약의 성도는 규율사업의 발생 할 때마다 다른 법을 수용하기 곤란한 것은 모두 동법에 규율함으로써 법의 성도가 모호해졌고, 또한 정책 및 행정면의 관한 사항과 사업경영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법체계의 합리성을 논여 하고 있다.

(3) 한국 데이터통신(주)의 사업영역권 설정

83년3월 데이터통신의 유성을 위한 건립 회사로 한국 데이터통신(주)를 설립하고 전기통신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통신업무의 허가를 하였으나 현행법하에서는 본래적인 공중전기통신사업으로서의 실행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

(4) 국가기관통신망의 통합 추진

전기통신차원의 남비를 막고, 장차 전기통신법 제101조의 전기통신망의 운영관리

위하여 현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전기통신법을 통합하고 있는 바, 의회 표결과 추진을 위한 법안본기 마련 필요하다.

4. 개정의 방향

현행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법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분리 제정하여

○ 전기통신법

- 전기통신의 구분 약명 명칭을 위한 기본적, 종합적 사항
- 기술발전 및 환경변화 추세외의 양용적 대책을 위한 일정 조장권 사항
- 통신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 유도
- 기간 통신망의 종합관리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전기통신정책의 수립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 하게 하고,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 공중전기통신이용에 관한 사법적 관계
  - 공중전기통신비율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 공중전기통신사업영역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여
- 수순한 이용관계법으로 한다.

5.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

가. 전기통신법

(1) 전기통신기본 계획의 수립

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합리적인 발전과 정보화 사회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전기통신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법제상,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의 질적수지에 관한 사항
- 공중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 자가전기통신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기술진흥 세부 계획의 수립시행

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전기통신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새로운 전기통신기술 및 방식의 채택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기술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전기통신 방식을 채택하거나 그 기종을 정할수 있다.

(4) 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정보를 관리,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 하고 새로운 기술을 예고 할수 있다.

(5) 정부는 연구기관,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고 통신부장관은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재정적 지원을 하게 할수 있다.

(6) 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지정하고 전기통신기자재 생산업자 및 전기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지도를 한다.

(7)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 수입하는 자는 통신부장관에게 영수증인을 얻어야하며 승인되지 아니한 기자재는 판매, 진열 할수 없다.

(8)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규정은 현행과 대동소이 하다

(9) 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한국전기통신공사또하여금 통합, 운영하게 할수 있다.

(10) 전기통신망의 효율적 관리, 운용, 전기통신기술진흥 등 전기통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신부장관 소속하에 국가통신조정위원회를 둔다.

나. 공중전기통신사업법

(1) 통신부장관은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외에 일정조건을 갖춘 자에게 정보통신등 공중전기통신사업의 일부를 경영하게 할수 있다.

(2) 통신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새로운 공중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사업자간의

업무 영역을 조정할수 있다.

- (3) 핵심부장관은 사업자의 공중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공익에 위반  
될 때에는 그 변경을 명할수 있다.
- (4) 가입전화 사용권의 승·거부의 및 각종  
신설·기기의 지급범위를 확대
- (5) 정보통신 회선의 종류를 세가지로 구분
  - 일반교환회선 : 가입전화 및 가입통신  
교환장비에 연결된 회선
  - 정보교환회선 : 정보통신에 전용되는  
교환장비에 연결된 회선
  - 특정통신회선 : 방송·영화·통신 방송으로  
사용되는 회선
- (6) 무선호출 이용 관계규정 신설
- (7) 기타 전보, 가입전화, 가입통신, 위탁착용  
직선전화, 전용 및 대역, 근상과 보전등에  
관한 규정은 전라 전기통신법의 내용을  
전수.